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27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1. 1.

발의자 : 김승희 · 김상훈 · 곽상도
윤영석 · 윤종필 · 조훈현
김성찬 · 박덕흠 · 임이자
이은권 · 곽대훈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, 유치원 및 학교 등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,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.
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(안 제21조제2항).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통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”를 “통합 운영·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
2.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·개발 및 보급
3.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운영·관리 지원
4.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·훈련
5.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
6.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
7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관련 업무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③ ~ ⑤ (생 략)</p>	<p><u>보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</u></p> <p><u>6.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</u></p> <p><u>7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관련 업무</u>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--	--